

## 한국계 Maquiladora 를 위한 Executive Summary<sup>1</sup> December 10, 2009

### 2010 년 멕시코 세법변경(Mexico's 2010 Tax Reform)

지난 11 월 5 일자로 국회에서 통과된 2010 멕시코 개정세법은 원유 수입감소로 인한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하여 세율을 높이고 조세원 관리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45 billion peso (약 40 억불)이 추가징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세법개정에 제시된 2010 년 Macro 경제지표는 GDP 3%, 인플레이션 3.3%, 유가 배럴당 59 불, 대미환율 MX\$13.80 입니다.

아래는 마킬라도라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.

#### (1) 법인세율 인상

- 현행 28%의 법인세율이 30%로 인상되었다. 30%세율은 2012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2013년에 29%, 2014년에 28%로 조정된다.

#### (2) 단일세율(IETU) 크레딧 사용 제한

- IETU는 최저한세의 일종으로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자금지출이 유입보다 많아 발생하는 크레딧을 법인세 계산시 차감하지 못하도록 제한함.

#### (3) 부가세(IVA tax) 율 인상

- 당초 빈곤세 2% 신설 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고 대신 현행 부가세율을 일반지역 15%에서 16%로, 국경지역 10%에서 11%로 각각 1%씩 인상.
- 인상전 세율 적용은 2009년 말까지 거래가 발생하고 자금결제가 10일내 (2010년 1월 10일까지)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.

#### (4) 현금 예금(Cash on deposit) 세율 인상

- 월간 현금 예금총액이 MX\$15,000(종전 25,000)이 넘으면 MX\$ 15,000이 넘는 부분에 대하여 3% 세금(종전 2%) 부과

#### (5) 불성실 보고자/ 납세자에 제재 강화

- 조세 당국은 납세자의 은행거래 내역을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다.
-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조세당국은 15일 간격으로 3번까지 이행요구서를 보내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과거 6년 중 과세소득이 가장 높았던 금액을 기준으로 당기 과세금액을 확정한다,

<sup>1</sup> 본 Summary는 Choi, Kim & Park, LLP (CKP 회계법인)이 한국계 마킬라도라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한 것이며 이는 저희의 법률적인 해석이거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므로 중대한 의사 결정 시에는 각자 전문가의 적절한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.

**Choi, Kim & Park, LLP**  
**Executive Summary for Korean Maquiladoras**  
**December 10, 2009**

기타 규정

- 2008년 1월 1일 이후 차입금, 증자금액 등 MX\$ 600,000가 넘는 자금을 받았을 경우 15 영업일 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는데 지난 2월 SAT는 그러한 거래가 수표, 은행자동이체 등으로 이루어 졌을 경우는 제외한다고 공시하였다.
- 2011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invoice는 SAT의 Internet Web page를 통한 디지털전자 방식에 의하여 발행 되어야 한다.
- 2010년 7월부터는 은행자동이체, 신용카드, Debit card의 거래전표도 정식 세무영수증(tax receipt)로 인정한다. (현행 수표거래만 인정)
- 일단 세무감사가 시작되면 감사해당연도 세금보고를 수정 신고할 수 없다. (중전 허용)
- 세무목적 감사(Dictamente Fiscal)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해야 하는 기준이 완화되었다. (전년도 기준 총수입 MX\$34,803,950 (중전 MX\$27 million) 이나 총자산 MX\$69,607,920 (중전 MX\$ 54 million)이 넘는 경우)
- 세무상 주소 (tax domicile)을 같은 해에 두번 이상 바꾸면 세무감사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.

본 Executive Summary는 1996년부터 수시로 작성 배포 되었으며 지난 Summary가 필요하거나 본 Summary에 의문이 있으시면 저희 Choi, Kim & Park (CKP) 회계법인 (전화 (858)560-5200 이나 Email: hoonkim@ckpcpas.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 끝.